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

(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, '26.11.4.(수))

□ 배경

○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정보(중복, 금기 여부 등)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, 심사평가원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DUR 시스템을 운영 중임

< DUR(Drug Utilization Review,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) >
의사, 치과의사가 처방·직접 조제 시 환자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과 중복되는 약,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등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

○ 최근 의료법(법률 제21238호) 개정에 따라, **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·직접 조제 시 반드시 'DUR 시스템'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** 하는 제도 시행 예정(미 확인 시 과태료 부과)

□ 주요 내용

○ **(의약품정보의 확인)** 의사·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 처방·직접 조제 시 DUR 시스템을 통해 중복, 금기 여부 등 의약품 정보를 확인

○ **(적용대상)** 의사, 치과의사

○ **(대상 의약품)**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

○ **(과태료)** DUR 시스템 확인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

○ **(시행일)** 의료법 2026년 12월 24일

□ 문의 사항

○ **(제도 관련)** DUR관리부(033-739-1703, 0301)

○ **(DUR 시스템 관련)** DUR정보부(033-739-0302)

< DUR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확인(요양기관업무포털, biz.hira.or.kr) >
1. **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(DUR 기능 포함)**: 청구소프트웨어 검사·인증 > 커뮤니티 > 심사청구SW조회
2. **DUR시스템 전용**: 모니터링 > DUR정보 > DUR 안내 > 자료실
(제목: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(DUR전용 SW) 목록 게시 / 본 목록은 지속 업데이트 예정)